

제553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건 명 :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기본설계 용역
- 심 사 일 : 2021. 05. 28.
- 요청부서 :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사업부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282,711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0일
 - 사업규모 : 철도시설 태양광발전설비(25MW) 신설
-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□ 대상 ■ 미대상	○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기본설계 용역으로서, 관계법령과 기준에 적합한 설계 품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한 설계용역 시행 필요성이 인정됨.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설계 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조정 : 281,711천원 → 242,195천원(감39,516천원, 14.02%) - 개략공사비 조정 : 발전사업인허가, 정밀안전진단, 사용전검사비 등 제외
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	○ 용역발주전 '첨부'된 <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> 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.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"서울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"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서를 보완할 것.(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, '14.10.13.) ○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□ 대상, ■ 비대상 ○ 과업내용서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-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·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. (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, '15.10.17.)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[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]

	확인 항목	세 부 내 용
용역 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	-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※ 기술심사담당관-600호('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	-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·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 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※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(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)
과업착수보 고서 제출시 확인	3. 용역실적 등재·관리 - 용역계약현황 통합관리시스템 등 재·확인(www.cems.kr) -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시 “건설 기술용역실적확인서” 첨부 확인	- 용역실적 등재·관리 절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적확인서 제출(PQ)</p> <pre> graph TD A[용역업체 (채입 기술자)] -- ① 등재 --> B[통합관리 시스템 (www.cems.ms.kr)] B -- ③ 확인 --> C[발주청 (행정 등)] C -- 실적조회 --> B B -- 증명발급 --> A D[관리자 (한국건설 기술관리 협회)] -- ② 검토 --> B E["보완요청 (미비시)"] --> D F["확인요청" (유선)] --> D G["(소관분)"] --- D </pr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②검토·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, 사유기입 반려조치</p> </div> *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(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:CEMS) :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 공하는 전자운영체계 -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(국토교 통부 고시)에 따라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된 용역에 대한 발주청 (계약, 사업)담당자의 확인·승인완료후 “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”를 발급받아 착수보고서와 함께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
심사 및 심의전	4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	-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<u>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</u>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· <u>사업계획 수립 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·운영하여

확 인 항 목		세 부 내 용
확 인		<p>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<p>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'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</p>
타 당 성 조사용역	5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·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 역 준공시	6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히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부서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「기술심의용역 관리시스템」 의 '심사심의관리 > 타당성심사 > 해당 심사요청 상세 화면(상단'성과품 등록'(버튼))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·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 ·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→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'<u>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</u>'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<u>비공개할 것(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)</u> <p>※ 시장방침 제135호('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</p>
설계시	7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<u>지하매설물</u>도는 우리시 (<u>통합공간정보 서비스</u>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·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 진	8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<p>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p>